

2019년 8월 26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원예경영과 과 장 김형식 (044-201-2251), 사무관 이문무 (2258)/ 제공일: 8월 23일(총 9매)

걱정없이 농사짓고 안심하고 소비하는 나라

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 단축을 위한 고시 개정·시행

-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 시행 -

《 주 요 내 용 》

◆ 등록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40일 단축하여 농업인을 위한 적극행정 실현

-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
- 농업인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하여 내재해형시설 등록 신청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,
- 신청서식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, 권리이용 제한 공개여부를 포함하여 분쟁 사전 예방 추진

- 농림축산식품부(장관 이개호, 이하 농식품부)는 농업인 등이 시설규모 및 작물 특성에 맞게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하우스 등이 내재해형 시설 규격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대한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「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」에 관한 고시를 일부 개정하여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- 이번 고시는 내재해형 설계기준에 적합하여 기 등록된 시설규격* 이외에 신규로 개발되었거나, 기존규격을 일부 변경하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건에 대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40일을 단축하고, 민원 신청시 특허 등의 공개 여부를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.

* 농진청 개발 57종 : 채소·화훼·과수 35, 버섯2, 인삼20

** 민간개발 13종 : 단동하우스 5, 연동하우스, 5, 광폭하우스 3

*** 기 개발된 시설규격에 대하여는 누구든지 자유롭게 활용 가능

- 내재해 설계기준은 강풍·대설 등 자연재해로 인한 원예·특작 시설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30년 빈도기준으로 설계하되 지역별로 쌓인 눈의 깊이를 측정하는 적설심(최소 20cm이상 ~)과 풍속(최소 22m/s이상 ~)*을 반영하여 작성된다.

* 지역별 적설심과 풍속 : 참고4 참조

- 대상이 되는 원예·특작시설로는 원예작물의 광선, 온도, 습도 등을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설치한 고정식·이동식 온실과 특용작물 재배용 시설 중 인삼 해가림재배시설이 해당된다.
- 그동안 원예·특작시설 내재재형 설계기준(적설심, 풍속)부합되지 않는 시설에 대하여는 재해보험 가입제한과 원예시설 현대화 사업 등의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였고,
- 신청서 상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, 권리이용 제한에 대한 공개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농업인과 시공사간 분쟁 소지를 안고 있었다.

-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시설규격 등록 민원 처리기간을 **과감히 단축**(100일→60일 , △40일)하여 농업인 및 시설규격 개발자의 시간과 비용부담 경감은 물론 영농편의 도모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,
- 시설 공사 후에 일어날 수 있는 **특허 무단사용 등 분쟁 가능성에 대하여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도** 동시에 있다고 밝혔다.
- 앞으로 전국의 “**원예·특작 재배농가와 관련 산업 종사자가 개정된 고시 내용을 인지**” 할 수 있도록 관련기관·단체에서도 농업인 등에게 적극적인 홍보를 당부했다.

□ 개정이유

- 민원인을 위한 적극 행정 실현을 위하여 등록 신청 수리 기간을 단축하고, 부득이 한 경우에 처리기한 일부 연장 추진
- 별지1호 서식에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, 권리이용 제한 공개여부를 포함하여 분쟁 사전 예방

□ 주요 개정내용

- 가. 새로이 개발되는 내재해형 규격 등록 신청 수요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등록 신청 수리 기간을 단축하고 부득이 한 경우에 처리기한을 연장하고자 함(제8조)
- 등록 신청 수리 기간을 현행 100일에서 60일로 단축하고(제8조 제1항), 부득이 한 경우 20일 이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(제8조 제2항)
- 나. 내재해형 규격 등록 신청서 상에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공시와 권리사용 및 제한 동의여부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분쟁 가능성을 최소화 하고자 함(별지 1호서식)

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

개정 2016. 12. 28.,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-180호

개정 2019. 08. 23., 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9-044호

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(등록 신청 수리여부의 통보)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재해형 시설 규격 등록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농촌진흥청장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의 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 ② 농촌진흥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 내 등록신청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 행	개 정 안
<p>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</p> <p>① 제8조(등록 신청 수리여부의 통보) 위원회의 위원장은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하며, 농촌진흥청장은 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신청일로부터 <u>100일</u> 이내에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신청의 수리여부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</p> <p>(신 설)</p>	<p>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 설계기준 및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 등에 관한 규정</p> <p>② 제8조(등록 신청 수리여부의 통보)</p> <p>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60일</u> ----- ----- -----</p> <p>③ <u>②농촌진흥청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처리기한내 등록 신청 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20일 이내에서 그 처리기간을 한차례 연장 할 수 있다.</u></p>

현 행	개 정 안				
<p>(별지 1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(해석) 신청서</p> <p>----- ----- ----- ----- 이하생략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첨부서류 (등록 시)</td> <td>1.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2. 구조계산서 1부 3. 이의신청서 1부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 padding: 5px;">동 의 서</p> <p>1.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(해석) 신청 업무처리를 목적으로 상기 신청인 정보와 신청내용을 수집·이용·제공함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2.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등록(해석)된 규격의 정보와 내용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농업인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3.(신설)</p> <p>4.(신설)</p>	첨부서류 (등록 시)	1.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2. 구조계산서 1부 3. 이의신청서 1부	<p>(별지 1호 서식)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내재해형 시설규격 등록(해석) 신청서</p> <p>----- ----- ----- 이하생략</p> <table border="1" style="width: 100%; border-collapse: collapse;"> <tr> <td style="width: 15%;">첨부서류 (등록 시)</td> <td>1.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2. 구조계산서 1부 3. 이의신청서 1부 <u>4.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1부.</u></td> </tr> </table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 background-color: #cccccc; padding: 5px;">동 의 서</p> <p>1. 생략</p> <p>2.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의 확대 보급을 목적으로 등록(해석)된 규격의 정보와 내용(제원, 설계도, 시방서 등)을 정보통신망에 공개하여 농업인 등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에 동의합니다.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<u>3. 신청인이 보유하고 있는 원예·특작시설 내재해형 시설규격과 관련한 특허 및 지적재산권 등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고 그 권리를 농업인 등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 합니다. <input type="checkbox"/> 동의, <input type="checkbox"/> 부동의</u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 <p><u>4. 특허 및 지적재산권 권리 사용 부동의시 특허 및 지적재산권 이용 제한 내용을 별도 공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</u> 신청인 (서명 또는 인)</p>	첨부서류 (등록 시)	1.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2. 구조계산서 1부 3. 이의신청서 1부 <u>4.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1부.</u>
첨부서류 (등록 시)	1.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2. 구조계산서 1부 3. 이의신청서 1부				
첨부서류 (등록 시)	1. 설계도 및 시방서 1부 2. 구조계산서 1부 3. 이의신청서 1부 <u>4. 특허 및 지적재산권 보유현황 1부.</u>				

참고 4

지역별 내재해 설계기준 적설심 및 풍속

1. 지역별 설계기준 적설심(30년 빈도)

적설기준 (cm)	강원도	경기권 (서울, 인천)	경상권 (부산, 울산, 대구)	전라권 (광주)	충청권 (대전, 세종)	제주도
20	-	-	거제, 고성, 김해, 남해, 마산, 거밀양, 사천, 양산, 창원, 의령, 진해, 함안, 의성, 울진, 울릉, 영천, 대구	고흥, 여수, 광양, 보성, 완도	-	고산, 서귀포, 제주
22	철원	강화, 포천, 동두천	안동, 함천, 고령, 청송, 군위, 칠곡	순천, 장흥, 해남, 강진, 진도	-	성산
24	-	가평, 과천, 부천, 안성, 의정부, 용인, 고양, 광명, 김포, 안양, 하남, 구리, 광주, 성남, 안양, 화성, 군포, 남양주, 시흥, 양주시, 의정부, 의왕, 파주, 수원, 양주, 영천, 파주	부산, 산청, 구미, 봉화, 성주, 영양	구례	-	-
26	원주	서울, 용진, 안성, 여주, 인천, 평택	예천	전주, 완주	금산, 보령, 홍성, 단양, 이산, 청양, 부여, 예산, 천안, 충청, 세종, 천안, 충청	-
28	화천	이천	김천, 영주	영암, 익산, 곡성	논산, 음성, 태안, 공주, 당진	-
30	인제, 양구, 영월, 홍천	-	거창, 상주, 함양	화순, 남원, 무주, 신안	서산, 영동, 옥천, 괴산, 대전, 세종, 진천	-
32	춘천	-	추풍령	목포	계룡, 서천, 보은, 증평	-
34	횡성	-	문경, 영덕	군산, 나주, 진안	청주, 청원	-
36	-	-	-	광주, 무안, 순창, 함평	-	-
38	-	-	울진	장수	-	-
40 이상	속초, 동해, 평창, 대관령, 삼척, 고성, 태백, 강릉, 태백, 청진, 양양	-	울릉	달양, 장성, 김제, 부안, 영광, 청읍, 임실, 고창	-	-

2. 지역별 설계기준 풍속(30년 빈도)

풍속기준 (m/s)	강원도	경기관 (서울, 인천)	경상권 (부산, 울산, 대구)	전라권 (광주)	충청권 (대전, 세종)	제주도
22	홍천	-	-	-	-	-
24	횡성	여주, 이천	봉화	순천	보은, 금산	-
26	삼척, 원주	광주, 안성, 양평, 오산, 용인, 평택	의성, 거창, 함양	구례, 곡성, 남원, 무주, 순창, 임실, 장수, 정읍, 진안	괴산, 음성, 제천, 증평, 진천, 충주	-
28	인제, 태백	강화, 과천, 구리, 군포, 남양주, 성남, 수원, 안양, 연천, 의왕, 하남	경산, 고령, 군위, 대구, 문경, 산청, 안동, 합천	부안	공주, 논산, 부여, 아산, 세종, 영동, 옥천, 천안, 청원, 청주	-
30	양구, 영월, 평창	서울, 가평, 고양, 광명, 동두천, 안산, 양주, 의정부, 파주, 포천, 화성	거제, 밀양, 상주, 성주, 영양, 영천, 예천, 청도, 청송, 창녕, 칠곡	고창, 김제, 담양, 보성, 완주, 익산, 장흥, 전주,	단양, 예산, 청양	-
32	철원, 춘천, 화천	김포, 부천, 시흥	구미, 경주, 김천, 영주, 울주, 울산, 진주, 의령, 하동, 추풍령	고흥, 광주, 영암, 장성, 화순	계룡, 당진, 대전, 홍성	-
34	정선	인천, 옹진	김해, 남해, 사천, 영덕, 양산, 진해, 창원, 함안, 포항	강진, 광양, 나주, 무안, 영광, 함평, 해남	보령, 서산, 태안	-
36	-	-	마산, 부산	목포	서천	-
38	동해, 강릉	-	고성	군산, 신안	-	성산
40 이상	고성, 양양, 대관령, 속초	-	통영, 울릉, 울진	진도, 여수, 완도	-	제주, 고산, 서귀포